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4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박상혁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서준오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용균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57명)

1. 제안이유

-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「청년기본법」 개정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와 관련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친화위원회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3조제7조).
- 나.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).

다.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”를 “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,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·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는 제외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의 “위촉하여야 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④ ~ ⑤ (생 략)

한다.

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.

⑤ ~ ⑥ (현행 제4항~제5항과 같음)